



제 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예술인 복지금고 및 공제사업 관련 규정 신설 등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11호)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예술인 복지금고 및 공제사업 관련 규정 신설 등(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 제11조 및 제18조)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오경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12. 3.

다. 회 부 일 : 2025.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예술인의 복지금고의 관리·운용,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규정하여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방법 및 공제사업 추진,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지재단이 복지금고를 조성하여 예술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금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규정하며,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관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한편, 복지재단이 공제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와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 공제 등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1조 및 제18조).

Ⅲ. 검토의견

1. 예술인 복지금고 및 공제사업 관련 규정 신설 등(안 제10조의2부터 10조의5까지, 제11조 및 제18조)

개정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복지금고(이하 “복지금고”라 함)를 조성하여 예술인 맞춤형 복지를 위한 예술인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함)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근거와 공제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인가 절차와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관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

아울러, “예술인 복지금고” 및 “예술인 공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예술인 <u>복지금고</u> 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생략) ② (생략)	제9조(정관)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 <u>복지금고</u> (이하 “복지금고”라 한다)-----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5. (생략) 6. <u>예술인 복지금고</u> 의 관리·운용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7. 예술인 <u>공제사업</u> 의 관리·운영 8. ~ 12.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u>복지금고</u> ----- ----- ----- 7. ---- <u>공제사업</u> (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8.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u>복지금고</u> 의 <u>재원</u>) <u>복지금고</u> 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u> 2. <u>공제사업 가입자의 부담금</u> 3. <u>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u> 4. <u>복지금고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의 수익금</u> 5. <u>법인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u> 6. <u>그 밖의 수입금</u> 제10조의3(<u>복지금고</u> 의 사업) ① 재단은
<u><신설></u>	

현행	개정안
<신설>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금고의 재원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제사업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예술인,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용역의 안전 관련 공제사업 3. 복지금고 재원 조성을 위한 사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복지금고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4(준비금의 적립) 재단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현행	개정안
<신설>	한다. 제10조의5(이익금의 처리) ①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補填) 2. 공제사업의 시행 3. 제10조의4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제10조의2·제10조의3 (생략)	제10조의6·제10조의7 (현행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과 같음)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u>한국예술인복지재단</u>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 <u>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 공제(또는 공제회)</u> ----- -----.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2. (생략) 4. 제11조를 위반하여 <u>한국예술인복지재단</u>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18조(과태료) ① ----- ----- -----. 1. ~ 3의2. (현행과 같음) 4. ----- <u>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 공제(또는 공제회)</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가. 복지금고의 재원 및 사업내용, 회계처리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

현행법 제10조¹⁾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사업으로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직업안정 및 고용창출 지원, 취약예술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등 예술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서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용과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을 재단의 사업으로 명시하여,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금융·공제 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1)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 3의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 4의2.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용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복지금고와 공제사업을 재단의 수행 사업으로 열거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방식이나 공제사업의 성격과 범위, 운영 구조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복지금고가 어떠한 재원을 통해 조성되는지, 공제사업이 어떠한 위험을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예술인에게 공제급여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제 사업 설계와 운영은 재단의 내부 기준이나 행정적 판단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또한,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장래 지급을 대비한 준비금 적립,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처리 방식,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및 통제 장치 등에 대해서도 현행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공제사업은 법률상 근거는 갖추고 있으나, 안정적·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기적인 사업 확대나 예술인 맞춤형 복지수단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복지금고의 조성 재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안 제10조의2), 복지금고 재원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안 제10조의3), 예술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공제사업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특히, 안 제10조의3제1항은 복지금고의 재원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공제사업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과 예술인,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용역의 안전과 관련된 공제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공제사업이 단순한 재정지원이나 임의적 사업이 아니라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하는 중요한 복지수단임을 분명히 하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개정안에 따른 공제사업은 예술인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제도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술활동의 비정형성과 고위험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만으로는 충분히 포섭하기 어려운 위험 영역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할 수 있음.

즉, 예술인은 산재보험과 별도로 공제사업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중첩적·보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존 사회보험 체계와의 기능적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타

당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안 제10조의3제3항은 공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단이 ‘공제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제사업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예술인 공제사업을 영리 목적의 ‘보험업’과 구별되는 복지 목적의 상호부조 제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써, 공제사업의 공공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공제사업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부터 공제부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구성원의 사고·손해 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업²⁾’과는 그 성격을 달리함.

2)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영유아보육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다수의 개별 법률에서도 공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참고 3 “유사업법례 현황” 참조).

더 나아가 개정안은 공제사업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준비금의 적립 의무와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안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이는 공제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적립하여 장래의 손실에 대비하고, 공제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려는 취지로서 공제사업의 공공성과 재정적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
- 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3. “**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손해보험업**”이란 손해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제3보험업**”이란 제3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안 제10조의3제1항제2호는 복지금고의 재원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술인,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용역의 안전 관련 공제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예술인”³⁾과 “문화예술용역”⁴⁾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복지금고의 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전제될 필요가 있으므로, “문화시설”에 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⁵⁾를 인용하여 현행법 제2조에 “문화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4)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5)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둘째, 안 제10조의3제2항6)은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복지금고의 재원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외에 복지금고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제10조제2항7)에서도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복지금고의 관리·운용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제2214811호)

제10조의3(복지금고의 사업) ① 재단은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금고의 재원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제사업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예술인,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용역의 안전 관련 공제사업
3. 복지금고 재원 조성을 위한 사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복지금고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7)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 3의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 4의2.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용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 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안 제10조의3제2항과 현행법 제10조제2항은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안 제10조의3제2항의 입법 실익 및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나. 예술인 복지금고 및 예술인 공제 관련 유사명칭 사용금지 (안 제11조 및 제18조)

개정안은 “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 공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1조 및 제18조).

이는 공적 성격을 가진 예술인 복지금고 및 예술인 공제사업과 민간 유사 사업 간의 혼동을 방지하고, 예술인이 공제사업을 이용함에 있어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이 예술인의 불안정한 소득 구조와 프리랜서 중심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에 부합하고, 공제사업 재원 조성 근거의 명확화, 공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공제규정 인가를 통한 운영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보험업법」 적용 배제를 통한 공제사업의 법적 성격 명확화,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 규정 신설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과태료 규정을 통한 이용자

보호 필요성 등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만, 복지금고가 실질적으로 공제사업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과 개정안 모두 복지금고와 공제사업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 복
지금고와 공제사업이 별개인지 등 법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해석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복지금고 용어를 삭제하고
공제사업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4

참고 1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 추진계획(안)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소득 수준이 낮고 불안정*하나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제공으로 안정적 예술활동 지원 필요

* 예술창작활동 수입 월평균 100만원 미만(75.9%), 겸업 예술인 비율(47.5%)/'24년 실태조사

- (추진 근거)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재단의 사업)

* 복지금고 재원조성 방법, 사업내용 규정 및 예술인 공제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이익금 처리 및 공제사업 준비금의 적립 등 회계운영 근거 마련(법률 개정안) 필요

- (예산) '26년 50억(신규, 정부출연금)

- (지원대상) 예술인, 예술사업자, 문화예술기관 등

- (사업내용) 다양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 예술인 맞춤형 공제상품* 운영

* 예술사업자 대상 공연·행사 주최자 책임공제('26년 시범), 문화예술기관 대상 영업배상 및 시설배상 책임공제 등, 예술인 대상 적립형·유니버설 저축공제, 포괄적 재해보상공제 등

□ '26년 사업추진 계획(안)

【공제사업 추진방향】

- 공제상품을 화재보험사와 협업하여 공동 개발하고 판매공제 방식으로 운영
- 예술사업자·문화예술기관의 의무가입 공제 위주로 초기 재원 마련
⇒ 향후 예술인 대상 적립형공제 등으로 예술인 소득안정에 기여

- ('26.上) ▲ 예술인 복지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문체부) ▲ 재단 정관 개정 및 관련 규정 제정 등(복지재단)

* 복지금고 재원 조성 및 공제사업 내용 및 회계원칙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련

- **(‘26.下)**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문체부) ▲ 예술인복지금
고 위원회 구성, 화재보험사 입찰·선정, 공제 시범상품 개발*
및 사전홍보·출시(복지재단)
- * 예술인 사고피해 지원을 위해 공연·전시행사 등 주최자 배상책임공제 등
검토
- **(‘27년)** 시범상품 운용 평가 및 환류, 추가상품 출시 검토 등

참고 2

유사 공제회 운영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건설근로자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사회복지공제회
설치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설립연도	1997년	2003년	2011년
정부출연 여부	출연금 지원없음	정부출연금(3,010억원) (과기부)	출연금 지원없음
자산규모	약 5조 3천억원	약 13조 6천억원	약 5천억원
회원수	약 555.7만명 * 2024년 사업연보 기준	약 13.2만여명	약 5만여명
가입대상	건설근로자 * 가입대상 : 1억이상 공공공사 및 50억이상 민간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등 소속 연구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공제회 각 기관별 누리집 제공 정보 참고

법률명	조문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의2(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금,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공제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0조(준비금의 적립) ① 중앙회는 결산기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①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⑧ 공제회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⑩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법률명	조문
	5.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제57조(공제 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기공사 공제조합법	제9조(사업)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8.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후생을 위한 공제사업 제9조의2(공제규정) ① 조합은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수수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3(「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조합의 사업 중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이익준비금 등의 적립)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填)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할 수 있다.

법률명	조문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이익금의 처리)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의 적립 4. 이익금의 배당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제49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50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공제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법률명	조문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 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공제금·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의 계상(計上)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제20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 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률명	조문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보험업법」 제19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決算期)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填)하는 경우와 제16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경찰공제회법	제19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填)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군인공제회법	제17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법률명	조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填)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교직원 공제회법	제23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상의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填)하는 경우와 제11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수 있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손실금의 보전(補填) 2.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집행 3. 제20조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